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3. 17.(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3. 5

나. 제안자 : 홍성욱, 김병철의원의 찬성자 6인

다. 회부일자 : 2014. 3. 5

라. 상정일자 : 2014. 3. 17(제21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홍성욱 의원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00cc 이상 6인승 이하 비영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¹⁾의 신규 등록시 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함 (안 별표 1)

1)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 SUV(Sports Utility Vehicle) 차량으로 험난한 도로를 운행하는데 적합한 구조의 프레임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4륜 구동장치 또는 자동제한장치를 갖춘 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상 다목적형
: (당초)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 (변경)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2000cc이상 6인승 이하 비영업용 다목적형 승용차에 대한 신규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기준요율을 인하하여 채권매입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국 최저 수준의 매입요율을 유지하여 국내 신차등록 유치 경쟁에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우리시가 2013년 신규 등록차량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내 인구증가와 함께 리스·렌터카 업체의 신차 등록을 인천에 대거 유치한 성과로서, 2011년부터 리스 및 렌트 차량업체 유치사업에 적극 대응하며 매입 채권요율을 12%에서 5%로 대폭 인하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공채 매입률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의 차량 세수가 대폭 증가되었음

년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차량세수	120억	380억	860억	1,480억	

- 이번 2000cc이상 레저·스포츠용 다목적형 차량의 채권 매입률 4% 적용으로 시민 부담이 경감되고, 신차 등록 유치 경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매입률 인하에 따른 우리시 리스차량 유치 전망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이강호 위원>

- 리스차량 세수 증가 괄목할만 함. 2010년 120억원에서 2013년에 1,480억원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음. 1대당 세수 차이는?
⇒ 1대당 480만원의 효과가 있음
- 1대당 30만원의 효과가 아닌가?
⇒ 그것은 채권 매입률 효과이고, 취득세율 7%가 추가되며, 대개 외제차량이므로 차량이 고가여서 그 정도의 효과 기대됨
- 4%로 인하되었을 경우 세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
⇒ 차량은 관내/관외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내분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음. 관외분은 취득세가 타시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관내로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됨. 300대 이상 늘어 것으로 보고, 취득세는 15억 정도 추가로 늘어남. 전체적으로 670대 증가, 36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됨.
- 자구노력에 의한 지방 세수 확보는 고무적인 사항임. 다른 분야에서도 발굴 필요
⇒ 리스, 렌트차량 취득세는 별도 노력이 없으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좋음. 세외수입 발굴 확대 요망

5. 토론요지

가. 찬 성 : 4명 (최용덕, 류수용, 이강호, 홍성욱)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4명 : 찬성 4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p>1. 자동차 신규등록</p> <p>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p> <p>① 1,500cc이상</p> <p>② 2,000cc이상</p> <p>③ 단,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p> <p>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p> <p>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p> <p>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p> <p>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p> <p>① 1,500cc이상</p> <p>② 2,000cc이상</p> <p>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p> <p>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p>	<p>취득세 과표의 4/100</p> <p>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p> <p>대당 390,000원</p> <p>취득세과표의 1.5/100</p> <p>취득세과표의 1.5/100</p> <p>취득세과표의 3/100</p> <p>취득세과표의 5/100</p> <p>취득세과표의 1.5/100</p> <p>취득세과표의 1.5/100</p>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p>3. 각종 허가</p> <p>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p> <p>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전·답)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p> <p>다. 골프장 등록</p> <p>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 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p>	<p>점·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사용 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시는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점·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p> <p>m²당 1,500원 m²당 3,000원 m²당 60원</p> <p>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함)</p>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